

2020 - 1624

() () ()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90호(2016.12.01)로 결정된 『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 계획』 구역 내 신도림동 436-4번지 일대에 주민제안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해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」 제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0월 15일

구로구청장

가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
나. 열람장소 : 구로구청 도시계획과(☎02-860-2956, E-mail : zeus80@guro.go.kr)

다. 도시관리계획(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

- 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
- 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
- 3)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가			(㎡)		
	1 (가)	417 - 1 , 418 - 5 , 418 - 9 , 419 - 21	132.8		-
	1 ()	418 - 2 , 419 - 24 , 436 - 4 , 436 - 10	1,134.0		
B6	2	436 - 7	1,239.0		-
	3	416 - 7 , 416 - 54	1,498.2		-
	4	416 - 64 , 437 - 1	3,853.0		-

○ 변경사유서

-	•	•

4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○ 차량 출입불허구간(변경)

	가		
			, 가 , ,
			, 가 , ,
	B6 - 1(가)		

○ 변경사유서

-	•	• B6 - 1(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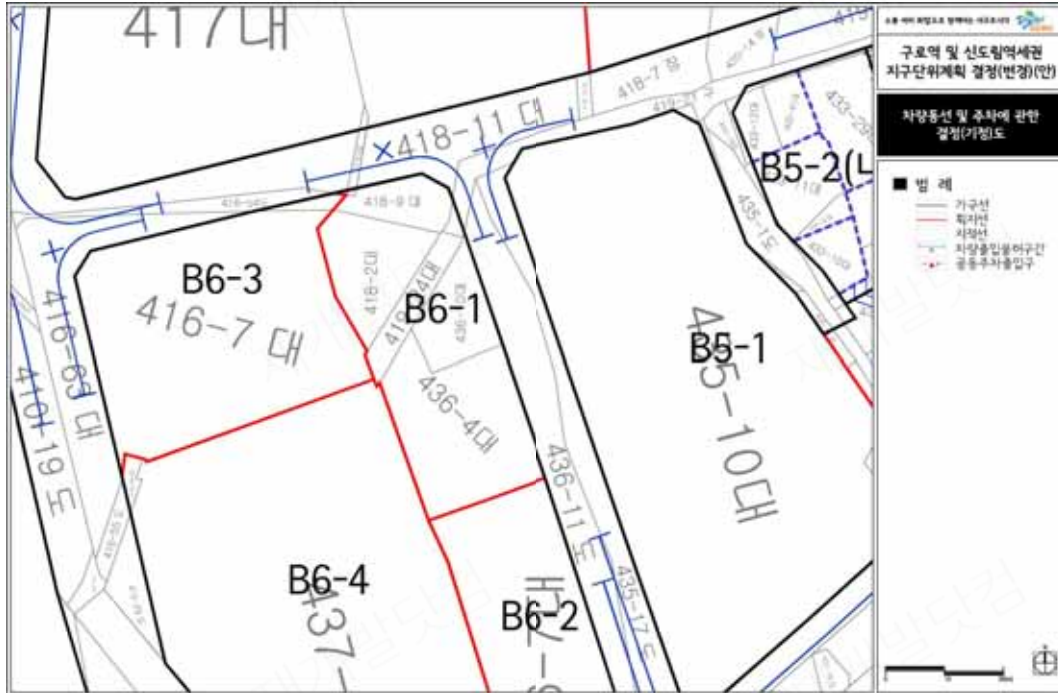
5) 그 외 변경사항 없음

라. 관계도서 :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열람장소에 비치

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시계획과(☎02-860-2956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(.)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